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근거법 전부개정〉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44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총괄 검토	3
1. 전부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주요 방향	3
2. 전부개정안의 체계	4
3. 총괄 검토의견	15
V . 주요 항목별 검토	21
1. 제1장 총칙 규정(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21
2. 제2장 연구회 규정(안 제12조부터 제29조까지)	49
3. 제3장 연구기관 규정(안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84
4. 제4장 연구개발성과 확산(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112
5. 제5장 개방형 혁신 기반 구축(안 제57조 및 제58조)	140
6. 제6장 과학기술 인재 역량 강화(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152

7. 제7장 평가·진단 및 운영(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	167
8. 보칙 및 벌칙(안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	186
9. 부칙 규정(안 부칙)	196

※ 참고자료

1. 연구기관 지역조직 현황	202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설립기관	204
3.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공시항목 비교	20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18.

다. 회 부 일 : 2026. 7. 01.

II. 제안이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공공기관 지정 해제(2024년),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등 정책방향의 대전환을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기술적·정책적 환경에서 연구기관의 운영 및 육성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청렴의무 및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기존에 미흡하였던 육성 관련 조항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국가 임무 중심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과 기술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자율적 운영체계 보장 및 내부통제 강화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불가 특

례를 신설하여 자율적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 2)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22조) 및 경영공시 의무화, 임원 청렴의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을 법제화하여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함.

나. 전략적 임무 수행 및 성과 확산 특례 마련

- 1)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연구 운영·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 2) 연구자 창업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자의 주식 소유 등을 허용하는 이해충돌방지 특례를 신설함(안 제50조).
- 3) 창업기업에 대한 전용실시권 특례 등을 신설함(안 제55조 등).

다. 조직운영 및 기능의 유연성 확보

- 1) 부설기관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부설기관 설립 절차를 명시함(안 제34조).
- 2) 연구회의 부설기관 운영 근거를 명시(안 제16조) 및 부설기관 실태조사 및 조직 폐지 요구 권한 신설함(안 제36조).

IV. 총괄 검토

1. 전부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주요 방향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되었음.
- 그런데 최근 기술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2024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데 이어, 2025년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Based System, 이하 “PBS”라 함)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는 등 연구기관의 운영과 연구수행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
- 특히 PBS 폐지에 따라 정부수탁사업의 종료재원을 기관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구기관의 기본연구사업과 국가·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체계를 재편하는 한편, 신규 정부수탁과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연구기관의 재정 및 연구수행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제정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PBS 폐지 등 최근의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연구자 창업 및 인재양성 등 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전부개정안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창의적·유연한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감사기구, 경영공시 및 청렴의무 등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개방형 혁신 및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임.

2. 전부개정안의 체계

- 현행법은 총칙, 연구기관, 연구회, 보칙 및 벌칙의 5개 장, 4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전부개정안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존 규정을 재배치·세분화하고, 연구개발성과 확산, 개방형 혁신, 과학기술인재 역량 강화 및 평가·진단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총 9개 장, 80개 조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전부개정안의 체계를 현행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장별 체계 비교>

현행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목적·정의·운영재원 등 기존 총칙 규정을 재배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시행계획, 기본사업 운영 및 공공기관 지정 배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제3장 연구회	제2장 연구회 (안 제12조부터 제29조까지)	연구회에 관한 규정을 연구기관에 관한 규정보다 앞에 배치하고, 부설기관·지역조직, 감사위원회·감사단 및 연구회의 예산·결산·회계에 관한 규정 신설·보완
제2장 연구기관	제3장 연구기관 (안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연구기관의 설립, 임원,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기존 규정을 절별로 재구성하고, 연구기관의 책무, 부설기관·지역조직 및 조직 정비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제32조의2 등	제4장 연구개발성과 확산 (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확산, 이해충돌 특례, 기술지주회사·기술출자회사·산학 공동법인·연구자창업기업 및 기술이전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제32조 등	제5장 개방형 혁신 기반 구축 (안 제57조 및 제58조)	인력교류 규정을 이동·확대하고, 파견·겸직·겸임·휴직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제33조 및 제33조의2 등	제6장 과학기술 인재 역량 강화 (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우수연구원 및 연수직 연구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학원대학 관련 규정을 이동·보완
제10조의2 및 제28조 등	제7장 평가진단 및 운영 (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	연구회·연구기관 평가 규정을 재배치하고, 경영혁신, 경영공시, 임원 청렴의무, 복리후생제도 및 내부규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제4장 보칙	제8장 보칙 (안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감독관청, 업무위탁, 비밀유지, 명칭 사용금지, 준용, 공무원 의제 및 수사 개시 통보에 관한 기존 규정을 이동·보완
제5장 벌칙	제9장 벌칙 (안 제79조 및 제80조)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동

○ 먼저, 제1장 총칙은 현행법의 목적, 정의, 운영재원 및 국유·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재배치하는 한편, 출연연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자율적 경영 보장과 운영재원에 관한 규정을 앞부분으로 이동·보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신설하였음. 또한 현행 기본사업 규정을 확대하여 기본사업의 운영 및 수탁과제 수행에 관한 근거를 보완하고,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음.

○ 제2장 연구회는 현행 제3장에 규정된 연구회 관련 조문을 연구기관에 관한 조문보다 앞에 배치하고, 설립 및 기능, 임원, 주요기구, 예산·결산 및 회계의 네 개 절로 구분한 것임.

- 현행 연구회의 설립·책무·정관·사업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이동·재구성하는 한편, 연구회의 부설기관과 지역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음. 아울러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회계원칙, 결산서 제출 및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연구회

의 재정·회계체계를 보완하였음.

- 제3장 연구기관은 현행 제2장의 연구기관 관련 규정을 연구회에 관한 장 다음으로 이동하고, 설립·해산과 조직, 임원, 예산·결산 및 회계의 세 개 절로 구분하여 재구성한 것임.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정관, 원장의 직무와 임면, 예산·결산 등에 관한 기존 규정을 이동·분리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책무와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음. 또한 지역조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연구회가 부설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효율화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정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장의 연임 관련 규정은 삭제하였음.

- 제4장 연구개발성과 확산은 현행법상 일부 규정에 그쳤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확대·체계화한 것임.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주식·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특례를 신설하였음. 또한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산학 공동법

인 및 연구자창업기업의 설립과 기술료 감면, 전용실시권 우선 부여, 시설 사용 및 창업 후 직무발명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제5장 개방형 혁신 기반 구축은 현행 인력교류 규정을 이동·확대하고, 연구회와 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겸직·겸임 및 휴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 것임.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중견기업 간 인력교류를 촉진하도록 연구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파견과 기술사업화·창업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한 겸직·겸임 및 휴직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직원이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및 연구자창업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겸직·겸임·휴직 등에 관한 근거를 두었음.

○ 제6장 과학기술 인재 역량 강화는 고경력 연구인력과 연수직 연구원의 활용·지원 및 대학원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장으로 구성한 것임.

- 기관 발전에 대한 기여가 큰 직원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하여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박사후연구원·석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인턴 등 연수직 연구원에 대한 차별 방지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음. 또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관련 규정을 이동·보완하면서 명칭을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변경하고, 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의 임직원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제7장 평가·진단 및 운영은 현행법과 행정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던 연구회·연구기관의 평가와 경영관리 관련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통합한 것임.

- 현행 연구기관 평가 규정을 이동하고 연구회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영혁신, 경영공시, 임원의 청렴의무 및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였음. 또한 현행 운영지침의 적용대상을 연구회까지 확대하고,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법령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운영·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음.

- 제8장 보칙은 현행 제4장의 감독관청, 업무위탁, 비밀유지의무, 동일 명칭 사용금지, 준용, 공무원 의제 및 수사 개시 통보에

관한 규정을 이동·재배치한 것임.

- 대부분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조문 번호와 용어를 정비하였으나, 동일 명칭 사용금지 대상에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를 추가하였음. 또한 연구회와 연구기관 임직원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안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적법한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활동을 직무 관련 수뢰로 보지 않는 단서를 신설하였음.

○ 제9장 벌칙은 현행 제36조 및 제37조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이동한 것으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일 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벌칙의 기본적인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동일 명칭 사용금지 대상이 확대된 점을 과태료 규정에 반영한 것임.

○ 이와 같이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문의 배치 순서를 변경하고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체계를 장과 절로 세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 확산, 개방형 혁신,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평

가·진단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였음.

- 조문 수가 증가한 것은 기존 규정을 이동·분리한 데 따른 부분도 있으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감사위원회, 부설기관 정비, 이해충돌 및 창업 특례, 우수연구원, 경영공시 등 새로운 제도를 다수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별 이동·변경 및 신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조문별 비교>

현행법		개정안		비 고
제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좌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조항 수정 (입법취지 반영) (일부) →제66조(경영혁신)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확대(정의 각호 추가)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3조→제31조
	제4조 법인격		제3조 자율적 경영 보장 등	제10조→제3조
	제5조 운영 자원			제30조로 재구조화
			제4조 운영 자원 지원	제5조→제4조
	제5조의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제6조 사업연도			제5조의2→제10조로 확대
	제7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6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6조→제42조
			제7조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제6조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신설
			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 협조	신설
				신설

현행법		개정안		비 고
제2장 연구기관			제10조 기본사업 운영 등	제5조의2→제10조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1절) 설립·해산과 조직	제30조 연구기관 설립	제2조, 제4조, 제8조→제30조로 재구조화
			제31조 연구기관 설립 제한	제3조→제31조
			제32조 연구기관의 책무	신설
	제9조 정관		제33조 연구기관 정관	제9조→제33조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0조→제3조
	제10조의2 운영지침의 통보			제10조의2→제70조
			제34조 연구기관 부설기관	신설
	제12조의3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제35조 연구기관 지역조직	제12조의3→제35조 (재구조화, 단어 수정 등)
			제36조 실태조사 및 조직 정비 등	신설
			제37조 연구기관 해산 등	제17조→제37조
	제11조 원장과 그 직무	(제2절) 임원	제38조 원장과 그 직무	제11조→제38조
	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제39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제12조→제39조 (축소: 연임규정 삭제)
	제12조의2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제40조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 제한	제12조의2→제40조
	제16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제41조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제16조→제22조·제41조·제47조로 재구성(일부 반영)
		(제3절) 예산·결산과 회계	제42조 사업연도	제6조→제42조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3조 연구기관 예산요구서 제출 등	제13조→제43조·제44조로 재구성 (일부 반영)
			제44조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제13조→제43조·제44조로 재구성 (일부 반영)
	제14조 회계원칙		제45조 회계원칙	제14조→제45조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제46조 연구기관 결산서 제출	제15조→제46조
	제16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제47조 회계감사	제16조→제22조·제41조·제47조로 재구성(일부 반영)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7조→제37조
제3장 연구회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제1절) 설립 및 기능	제12조 연구회 설립	제18조→제12조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제13조 연구회의 책무	제19조→제13조
	제20조 정관		제14조 연구회 정관	제20조→제14조
	제21조 사업		제15조 연구회 사업	제21조→제15조 (기능 확대)
			제16조 연구회 부설기관	신설
			제17조 연구회 지역조직	신설
	제21조의2 협동·융합연구사업			제21조의2→제15조

현행법		개정안		비 고
				(일부반영)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제2절) 임원	제18조 임원과 그 직무	제22조→제18조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9조 임원 선임 및 임기	제23조→제19조
	제23조의2 임원의 해임		제20조 임원 해임	제23조의2→제20조
	제24조 이사회	(제3절) 주요기구	제21조 이사회	제24조→제21조
			제22조 감사기구	제16조→제22조·제41조·제47조로 재구성(일부 반영)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		제23조 위원회 및 협의회	제25조→제23조
	제26조 사무기구	(제4절) 예산·결산과 회계	-	현행법 제26조 삭제
			제24조 사업연도	신설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5조 연구회 예산요구서 제출	제27조→제25조·제26조로 재구성(일부 반영)
			제26조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 제출 등	제27조→제25조·제26조로 재구성(일부 반영)
			제27조 회계원칙	신설
			제28조 연구회 결산서 제출	신설
			제29조 회계감사 등	신설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제28조→제65조로 이동
		제4장 연구개발 성과 확산	제48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신설
			제49조 연구개발성과 확산 지원 등	제32조의2→제49조(확대)
			제50조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이해충돌 특례	신설
			제51조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신설
			제52조 기술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특례 등	신설
			제53조 산학 공동법인 설립 등	신설
			제54조 연구자창업기업 설립 등	신설
			제55조 창업 특례 등	신설
			제56조 창업 후 직무발명 신고 등	신설
		제5장 개방형	제57조 인력 교류 확대	제32조→제57조

현행법		개정안		비 고
		혁신 기반 구축	제58조 파견, 겸직 및 휴직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제6장 과학기술 인재 역량 강화	제59조 우수연구원 선정 등	신설
			제60조 연수직 연구원 활성화	신설
			제61조 대학원대학 설립	제33조→제61조
			제62조 국가연구소대학 학위과정 등	제33조의2→제62조
			제63조 국가연구소대학 교원	신설
		제7장 평가 진단 및 운영	제64조 연구회에 대한 평가	신설
			제65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제28조→제65조로 이동
			제66조 경영혁신	제1조→제66조 (일부 반영)
			제67조 경영공시	신설
			제68조 임원의 청렴의무 등	신설
			제69조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신설
			제70조 운영지침 통보	제10조의2→제70조 (확대: 연구회까지 포함)
			제71조 내부규정 운영·개선	신설
제4장 보칙	제29조 감독관청 등		제72조 감독관청 등	제29조→제72조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73조 업무 위탁	제30조→제73조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74조 비밀유지 의무	제31조→제74조
	제31조의2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75조 동일 명칭 사용 금지	제31조의2→제75조 (확대: UST 포함)
	제32조 인력 교류의 확대 등			제32조→제57조
	제32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32조의2→제49조 (확대)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제33조→제61조
	제33조의2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제33조의2→제62조
	제34조 준용규정		제76조 준용규정	제34조→제76조
	제3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77조 (직무관련 수뢰 제외 단서조항 추가)
	제35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제78조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제35조의2→제78조
제5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9장 벌칙	제79조 벌칙	제36조→제79조
	제37조 과태료		제80조 과태료	제37조→제80조

3. 총괄 검토의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중장기·대규모 연구개발과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공공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및 운영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PBS 폐지 결정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및 연구사업 운영체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임무 중심 연구체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및 인재양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에 상응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연구회 평가, 경영공시, 임원 청렴의무 및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 책임경영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의 조문을 단순히 정비·재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지정 배제, 부설기관의 설치·폐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특례, 각종 기술사업화 법인의 설립, 전용설시권의 우선 부여 및 겸직·휴직 특례 등 연구회와 연구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기존의 출연연구기관 운영체계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제도와 조화될 수 있는지를 조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11조제2항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관한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인력 및 연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공공기관 재지정 가

능성에 대한 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BS 폐지 이후
임무 중심 연구체계의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환경·제도 및 기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정책적 영역이므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을 법률상 지정 대상에
서 배제할 경우 향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1)에서 공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
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
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
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
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
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
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
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을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공공기관 지정제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전부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산학협력 및 대학원 대학 운영 등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 교육부 및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기존 법률과의 중복·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산업통상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술지주회사 및 연구자 창업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부개정안에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경우 향후 양 법률의 개정 시점이나 내용이 달라질 경우 법률 간 정합성이 저해되고 현장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부는 연구기관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의 조직·운영·회계 및 감독에 관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을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법률에서 직접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명 변경 인가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재정경제부도 기술출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하여야 하므로 개별법에 추상적인 세제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실제 세제지원의 근거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및 산학협력 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다른 법률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성상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특례를 두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전부개정안은 변화된 연구기관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자율적·임무 중심의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현행법상 미흡하였던 연구개발성과 확산과 기관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기본적인 방향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 공공기관 지정의 법률상 배제와 같이 기존 행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제도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이전·산학협력·대학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관계 법률과의 정합성, 관계부처 간 권한 배분 및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부 조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V. 주요 항목별 검토

1. 제1장 총칙 규정(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가. 개정안의 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은 현행법의 목적, 정의, 자율적 경영 보장 및 운영재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재배치하고, 출연연구기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사항들을 신설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법의 목적에서 ‘경영 합리화’를 안 제66조로 이동하고 창의적·자율적 연구문화 구축과 책임경영 확립 등을 강조하였으며(안 제1조), 부설기관·부설연구소·지역조직의 정의를 신설하였음(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안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주기의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안 제7조 및 제8조). 또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명시하였음(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창의적·자율적 연구문화를 구축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부설기관”이란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설치한 부설연구소, 지역조직 등의 조직을 말한다. 4. “부설연구소”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부설기관으로서 연구기관과 동일 법인에 속하지만 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 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	직운영 및 인사·재정 등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조직을 말한다. 5. “지역조직”이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부설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자율적 경영 보장 등)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재원 지원)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연구기관 및 연구회에</u>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u>제7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u>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연구기관 및 연구회의</u>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연구기관 및 연구회에</u>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④ <u>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접수할 수 있다.</u> <u>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u>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u> <u>제6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u>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연구회 및 연구기관의</u>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연구회 및 연구기관에</u>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현행	개정안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연구기관 및 연구회</u>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2186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연구기관 및 연구회</u>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연구회 및 연구기관</u>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연구회 및 연구기관</u>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현 행	개 정 안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u>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신 설>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u>제10조에 따른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u>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u>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 협조)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u>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신설>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사업 운영 등)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이하 “기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정한다. ③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하는 경우 정부수탁과제 또는 기업수탁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른 수탁과제 수행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기관에 알려야 한다.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장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1조(목적)는 현행 목적조항을 변화된 출연연 정책 환경과 전부개정안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창의적·자율적 연구문화 구축, 책임경영 확립,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을 목적조항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2조(정의)는 현행법상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정

의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었던 부설기관·부설연구소 및 지역조직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현재 이 법에 따른 연구회·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연구회 · 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현황 >

구분	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부설기관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
부설연구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지역조직	63개 지역조직 [참고 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²⁾만

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부설기관과 부설연구소의 개념을 새로 정하고, 제2장 및 제3장에서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설치·운영 및 정비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부설기관의 유형과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의 기능과 지역적 연구수요에 따라 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안 제2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2조제3호는 “부설기관”을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설치한 “부설연구소, 지역조직 등의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부설기관 정의에 포함된 “등의 조직”은 부설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그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부설기관은 부설연구소 또는 지역조직으로만 분류되고 있으며, 그 밖의 유형에 해당하는 부설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등의 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조직도 부설기관에 포함될 수 있고, 안 제16조·제34조·제36조 등에 따른 설치·운영 및 조직 정비의 대상이 되는 부설기관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유연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그러한 필요성은 부설기관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기보다 필요한 조직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2조제3호의 “부설연구소, 지역조직 등의 조직”을 “부설연구소 또는 지역조직”으로 수정하거나,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고려할 경우 “부설연구소, 지역조직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2조제4호의 부설연구소 정의에는 연구회가 설치하는

부설연구소도 포함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4호는 부설연구소를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부설기관이라고 규정하면서, 뒤에서는 “연구기관과 동일 법인에 속하지만” 조직 운영 및 인사·재정 등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회가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해당 부설연구소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연구회와 동일한 법인에 속하게 되므로, 개정안 문언에 따르면 연구회가 설치한 부설연구소는 안 제2조제4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는 연구회가 설치한 부설연구소가 없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연구회 차원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연구회의 부설연구소 설치 가능성을 인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문언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4호의 “연구기관과 동일 법인에 속하지만”을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과

동일 법인에 속하지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3조(자율적 경영 보장 등)**는 현행 제10조를 총칙으로 이동하면서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상에 연구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연구회 역시 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경영 보장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현행 제5조의 운영재원 규정을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이동한 것임.

- 정부출연금 등에 의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 정부의 지속적·안정적 재원 마련 노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역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급 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4조제4항**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이 법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³⁾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기부금품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적법하게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별도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별 법률에 기부 또는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근거를 두는 입법례로는 「한국과학기술원법」⁴⁾ 등 4대 과학기술원⁵⁾ 근거법,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⁶⁾,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⁷⁾ 등이 있음. 이 중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민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접수 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3(기부 등)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8조(기부 등) 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접수 심사, 조건부 기부의 처리, 이해충돌 방지, 기부금품의 관리·사용 및 공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 참고로,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4대 과학기술원 근거법은 토지·연구시설·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기부·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부금품의 기부·접수 절차, 심사기준, 관리·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이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이 법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6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는 현행 제7조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이동·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과 연구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며,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로 보임.

○ 다만, 안 제7조제1항제3호는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동일한 내용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제1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과 함께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249호)의 당초 문언과 동일하나,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동 대안은 2026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의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1862호)」(2026.8.11. 공포, 2027.2.12. 제21조의3 시행)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결되었음.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향후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별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법규명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동일한 내용에 대한 국회의 최근 심사·의결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7조제1항제3호를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안 제10조(기본사업 운영 등)는 현행 제5조의2에 따른 기본사업 운영 규정을 항별로 재구성하는 한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하는 정부수탁과제·기업수탁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회가 수탁과제 수행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이는 기본사업의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수탁과

제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10조의 기본사업에 사용된 재원 관련 용어를 안 제4조와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운영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반면, 안 제10조제1항은 기본사업을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원을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이 안 제4조의 “정부의 출연금”과 동일한 의미인지, 또는 정부의 출연금 중 연구개발사업에 편성된 예산만을 의미하는지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음.

○ 둘째, PBS 폐지 이후 운영될 기본사업의 범위와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PBS 폐지 이행방안은 기관출연금 사업을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수탁사업 종료 재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전략연구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 제10조의 기본사업에 전략연구사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이라는 정책상 사업유형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의 구분을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PBS 폐지 이후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유형과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질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사업의 범위와 유형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안 제10조제1항의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을 안 제4조와 동일하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정부출연금”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시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11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조직·운영·감독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⁹⁾에 따라 대학이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교육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연구기관이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또는 산학 공동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안 제11조제1항의 우선 적용규정으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조직·운영·감독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이에 산학협력단의 조직·운영·감독에 관한 사항에는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안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둘째,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회 및 연구기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법률상 배제하는 것은 출연연의 자율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지정체계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정책적 판단 권한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연구개발목적기관과 연구회·연구기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변화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회·연구기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변화 경과 >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날짜	주요내용
'18. 3.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연구개발목적기관 별도 분류 및 특성 반영 근거 마련
'19. 1. 30	기재부,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및 관련 지침 개정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 연구개발목적기관 특성 반영
'22. 12. 22.	과기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기준」 배포 ※ 블라인드 채용 완화, 해외인력 유치 지원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23. 1. 30.	기재부, 4대 과기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24. 1. 31.	기재부, NST 및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한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NST 및 과기분야 출연연 지정 해제
'25. 3. 4.	과기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출연연 관리·운영·지원체계 도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연구회와 연구기관은 2024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따른 별도 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있음.

- 안 제11조제2항은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상태를 법률적으로 고정하여,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첫째, 출연연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조직 및 연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둘째,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인력·보수·조직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해외 우수인력 유치와 도전적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율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셋째,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추진 중인 출연연의 자율·책임 중심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정 배제와 함께 감사기구, 경영공시, 임원의 청렴의무, 합리적인 복리후생제도 운영 및 내부규정 개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별도의 책임경영 체계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¹⁰⁾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기관의 재정지원 구조, 정부의 지배력 및 기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으로 지정할 수 없는 예외 기관을 직접 열거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 지정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함께 개정하지 않고 개별 설립법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배제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정체계와 정합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에 공공기관 지정 배제 특례를 두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기관의 운영상황과 정책환경에 따라 매년 판단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취지, 지정 해제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 및 개별법에서 공공기관 지정 자체를 배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안 제11조제2항은 출연연의 자율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탄력성을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지정은 환경·제도 및 기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법률상 지정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할 경우 향후 기관의 기능이나 운영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 제11조제2항의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제2장 연구회 규정(안 제12조부터 제29조까지)

가. 개정안의 내용

- 전부개정안 제2장은 현행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에 관한 규정을 연구기관에 관한 규정보다 앞에 배치하고, 이를 제1절 설립 및 기능, 제2절 임원, 제3절 주요기구 및 제4절 예산·결산과 회계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의 연구회 설립·책무·정관·사업에 관한 규정을 이동·확대하고,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연구회가 부설기관 및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특히 연구회의 사업에 연구기관의 행정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지원, 인재정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있음.
-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규정을 이동·정비하고, 안 제22조는 현행 연구기관 감사 관련 규정 및 하위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어 온 감사체계를 재구성하여 연구기관 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23조는 현행 기획평가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이동·보완하여 경영협

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연구회의 사업연도, 출연금 예산요구, 예산 및 사업계획, 회계원칙, 결산서 제출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연구회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어 온 재정·회계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제3장 연구회</u> <u><신 설></u> <u>제18조(연구회의 설립)</u>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u><신 설></u>	<u>제2장 연구회</u> <u>제1절 설립 및 기능</u> <u>제12조(연구회 설립)</u>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u>제13조(연구회의 책무)</u> ① 연구회는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되고 그 성과의 질을 더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2(협동·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예산·평가·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21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육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협력을 추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연구개발, 성과확산, 인력 교류 등에 있어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는 제15조제5호에 따라 협동 및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④ 연구회는 인사·예산·평가·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는 제15조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회 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현행	개정안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u>제21조(사업)</u>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u><신 설></u> 3. <u>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평가</u> 4. <u>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이하</u>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u>제15조(연구회 사업)</u>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u>연구기관의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지원</u> 4. <u>연구기관의 평가</u> 5. <u>연구기관 간 또는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이하 “협동·융</u>

현행	개정안
“협동·융합연구”라 한다)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신 설> <신 설> 8.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u>사업</u> <신 설> <신 설>	합연구”라 한다)를 위한 지원 등 6.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8.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9. 연구기관의 인재정책을 위한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11.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u>사업 및 연구</u> 제16조(연구회 부설기관) ① 연구회는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통합, 해산 절차 및 법인전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연구회 지역조직) ① 연구회가 부설기관으로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치·운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u>비상근</u> (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u>총괄한다</u>. <u><신 설></u>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u><신 설></u>	<u>영계획에 대한 걱정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걱정성분석의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걱정성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걱정성분석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2절 임원</u> 제18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u>비상근</u>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u>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u>.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연구기관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u>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u>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3조의2(임원의 해임)</u>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u>제29조제3항에</u>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체상·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u>제19조(임원 선임 및 임기)</u>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0조(임원 해임)</u>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u>제64조에</u>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체상·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현행	개정안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신 설></u> <u>제24조(이사회)</u>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u>제2호</u> 및 <u>제4호</u>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신 설></u>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u>예산·결산</u> 및 <u>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 연구기관의 <u>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u>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제3절 주요기구</u> <u>제21조(이사회)</u>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의결하며</u>,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u>제5호</u> 및 <u>제7호</u>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2.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u>사업계획의 수립·승인 및 변경</u> 3.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u>예산 및 결산</u> 4.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u>정관의 변경</u> 5. <u>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u> 6.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

현행	개정안
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의 <u>자체감사에</u> 관한 사항 8의2. <u>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u>에 관한 사항 6. 협동·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함한다)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기관의 <u>감사에</u> 관한 사항 10. <u>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설치</u> 승인에 관한 사항 11. 협동·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감사기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한 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 및 감사단을 두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감사업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u>연구기관의 원장</u>	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단은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조직으로 감사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원장에게 위임된 연구기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단 소속 전담인력을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및 전담인력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위원회 및 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u>원장</u>으로 구성되

현행	개정안
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u>제26조(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u> <u>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u> <u>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u><삭 제></u> <u>제4절 예산·결산과 회계</u> <u>제24조(사업연도)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u> <u>제25조(연구회 예산요구서 제출)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출연금 예산</u>

현행	개정안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신 설> <신 설>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 제출 등) ①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원칙) 연구회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28조(연구회 결산서 제출) ① 연구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9조(회계감사 등) ① 연구회는 매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현행	개정안
<신설>	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③ 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제1절 설립 및 기능(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연구회의 설립·책무·정관 및 사업에 관한 현행 규정을 재배치·보완하는 한편, 연구회가 부설기관 및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협력과 지원·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책무와 사업 범위를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새로운 연구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12조(연구회 설립)는 현행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연구회의 성립 및 설립등기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3조(연구회의 책무)는 현행 제19조에 따른 연구회의 책무를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공통 애로사항 해결 지원 및 기능 조정·정비 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유지하면서 연구기관의 자율성·창의성 제고를 위한 지원·육성·관리, 연구기관 간 협력 촉진 및 협동·융합연구사업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책무를 추가하였음.
- 이는 연구기관 간 협력과 융합을 촉진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적·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4조(연구회 정관)**는 현행 제20조에 따른 연구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중요 정관사항의 변경인가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5조(연구회 사업)**는 현행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른 연구회의 사업을 확대·정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 협동·융합연구 지원, 연구성과 확산 지원 등의 기존 기능과 함께 연구기관의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지원 및 인재정책 지원 등을 연구회의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현행 제21조와 비교하면, 개정안은 연구기관의 행정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지원과 인재정책 지원 등을 연구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현행의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는 안 제15조에서 “연구기관의 평가”로 정비하되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안 제65조제1항에 별도로 규정하였음. 그 밖의 주요 사업은 현행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6조(연구회 부설기관)**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가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 및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부설기관의 설치·운영·통합·해산 절차 및 법 인전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연구회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환경 변화 및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직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설기관의 법인전환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의 정의규정과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6조제2항은 부설기관의 법인전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2조제3호는 부설기관을 부설연구소, 지역조직 등의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설연구소는 연구기관과 동일 법인에 속하는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는 법인전환이 가능한 반면 지역조직은 별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부설연구소가 별도의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안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설연구소의 정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반면, 개정안에는 법인전환의 대상이나 전환 후 법적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안 제16조제2항의 ‘법인전환’이 어떠한 경우를 예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별도의 법인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부설기관이 없다면 안 제16조제2항에서 ‘법인전환’을 삭제하거나, 법인전환을 예정하고 있다면 그 대상과 전환 후 법적 지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7조(연구회 지역조직)**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가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적정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준·절차·방법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연구회가 지역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역적 필요성 및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두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7조제2항과 제4항**의 위임규정은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7조제2항**은 “적정성분석의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4항은 다시 “그 밖에 적정성분석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항이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별도의 사항을 위임하려는 것인지 문언상 확인하기 어렵고, 적정성분석의 절차·방법은 이미 제2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되므로 양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규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17조는 적정성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그 분석 결과가 지역조직의 설치 여부에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적정성분석 결과 지역조직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설치가 제한되는지, 설치·운영계획을 보완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사회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 적정성분석을 지역조직 설치에 관한 실질적인 사전검토 절차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면, 분석 결과를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이나 그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분석 결과의 법적 효과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임원(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연구회의 임원과 그 직무, 임원의 선임·임기 및 해임에 관한 현행 규정을 이동·정비하는 한편, 이사장의 직무와 감사의 권한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회 임원의 구성·선임·임기 및 해임에 관한 현행 체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이사장의 조직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 제22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신설에 맞추어 감사의 권한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18조(임원과 그 직무)는 현행 제22조에 따른 연구회의 임원과 그 직무에 관한 규정을 이동·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과 동일하게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을 비상근으로 하되, 개정안은 이사장의 직무에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추가하고,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 근거를 신설하였음.

- 또한 감사가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신설되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되 감사위원회의 연구기관 감사업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이는 이사장의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라 연구회 감사와 연구기관 감사 간의 관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9조(임원 선임 및 임기)는 현행 제23조에 따른 연구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려는 것임.

-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장의 임명, 이사의 구성·임명, 감사의 임명, 이사장·이사·감사의 3년 임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현행 제23조제5항이 이사장 및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안 제19조제5항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였음.

-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임명과 해임에 관한 조문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20조(임원 해임)**는 현행 제23조의2에 따른 연구회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평가 결과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법률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및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현행의 해임사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구회 평가에 관한 조문 이동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안 제64조**로 정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제3절 주요기구(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연구회의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 관한 현행 규정을 이동·정비하는 한편,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

에 명시하려는 것임.

- 연구회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와 자문기구의 기능을 정비하고, 현재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감사체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¹¹⁾은 연구회가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¹²⁾은 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 소속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

○ 참고로,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단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감사 · 감사위원회 · 감사단 간 역할 비교 >

구분	감사(監事)	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	감사단(단장)
임명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회 이사장	연구회 이사장
소속·지휘 체계	독립된 자체감사기구의 장 (감사업무 총괄)	이사장이 감사위원장을 지휘·감독	감사위원장이 지휘
감사대상	연구회(내부감사)	소관연구기관(부설기관 포함) 및 연구기관이 업무 일부를 위탁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위탁업무 관련 사항	- (감사위원회 지원 및 사무처리)
감사범위	1. 회계 및 행정사무 집행 과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관계법령, 정부지침, 연 구회 정관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3. 이사회 및 자문기구에 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사항 4.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 시사항 또는 이사장의 요청 사항 5. 기타 연구회의 감사(監 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1. 기관 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및 행정업 무 처리의 합리성에 관한 사항 2. 임직원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법령, 규정, 지침 및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 항 4. 이사회 결정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과 그 운용, 집행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취득과 수급 관리, 물품구매와 용역 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이전(以前) 감사처분요구 등 이행에 관한 사 항 9. 과학기술분야 연구의 성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감사계획 수립권	○	○	-
자료요구 권	○	○	○
감사결과 확정권	○	○	-
처분·개선 요구권	○	○	-
결과 보고대상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회 이사회	-
이의신청	1. 신청에 의한 재심의	1. 신청에 의한 재심의	-

구분	감사(監事)	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	감사단(단장)
처리	- 처분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이사장→감사) - 재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과 회신(감사→이사장) 2. 직권에 의한 재심의 : - 통보한 감사결과 중 그 내용을 철회·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처분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연구기관의 장→감사위원회) - 재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 2. 직권에 의한 재심의 : - 통보 및 처분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력·예산	독립성 보장 (이사장이 조직·인사·예산·제도상 필요한 조치 적극 마련)	독립성 보장 (이사장이 조직·인사·예산·제도상 필요한 조치 적극 마련)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먼저, **안 제21조(이사회)**는 현행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24조와 비교하면, 개정안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 후보자의 선정·추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정관 변경 등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현행의 사업계획 승인 및 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사업계획의 수립·승인·변경 및 연구회·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설치 승인으로 확대·정비하였음. 또한 현행의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

항”을 “연구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연구회의 기능과 부설기관·감사기구 등 새로운 조직체계를 이사회의 권한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1조제2항제9호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연구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22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권한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별 감사 사안은 감사위원회의 처분심의 절차를 통하여 결과가 확정되고,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연간 감사계획 및 연간 감사결과에 대해서만 의결하며 개별 감사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는 방식임.

- 그런데 안 제21조제2항제9호의 문언만 보면 개별 감사의 실시 및 감사결과·처분 등도 이사회의 심의·의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간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안 제21조제2항제9호를 “연구기관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 및 연간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 범위와 감사위원회의 개별 감사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22조(감사기구)는 현행 제16조에 따른 연구기관 자체감사 제도와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 제도를 재구성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을 두고 그 구성·임기·임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연구회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 소속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 임명방법, 임기 및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감사단의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으

로서 연구기관 감사의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2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2조제3항은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세부 자격을 연구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22조 자체에는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나 감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재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모두 상근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부위원은 없으며, 결격사유 및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가 연구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법정 감사기구로 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과 직접 관련되는 결격·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을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22조제6항의 감사단 전담인력 파견에 관한 문언을 감사권한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2조제6항은 감사위원회가 “제41조제2항에 따라 원장에게 위임된 연구기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단 소속 전담인력을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안 제41조제2항에 따라 원장에게 위임되는 감사는 연구기관의 자율감사이고, 감사단 소속 전담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원장이 위임받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에 개정안의 문언은 감사위원회 또는 파견된 감사단 인력이 원장에게 위임된 감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원장이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단 소속 전담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의 수행주체와 감사단의 지원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23조(위원회 및 협의회)**는 현행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려는 것임.

- 연구기관 간 기능 조정 및 평가업무 지원 등을 위한 기획평가위원회,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경영협의회 및 연구기관의 연구기획과 협동·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각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주요 내용을 유지한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제4절 예산·결산과 회계(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현행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구체화하고, 연구회의 사업연도, 회계원칙 및 결산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연구회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

으로 보임.

- 먼저, 안 제24조(사업연도)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의 사업연도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25조(연구회 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26조(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 제출 등)는 현행 제27조에 따른 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 및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예산 보고에 관한 규정을 분리·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27조제1항은 연구회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안 제25조와 제26조로 구분하고 예산요구서 및 예산·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구체화하였음.

- 이러한 정비는 연구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6조제1항은 “사업연도별 예산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사업연도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27조(회계원칙)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의 회계에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고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현행 제14조¹³⁾ 및 안 제45조에서 연구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회계원칙과 동일한 취지의 기준을 연구회에도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28조(연구회 결산서 제출)는 현행 제27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연구회의 사업실적 및 결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산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회의 결산서 제출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8조제1항은 결산서의 제출기한을 연구회의 정관에 맡기고 있어 이를 대통령령 등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27조제2항은 연구회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¹⁴⁾은 그 보고기한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결산서 제출절차를 별도의 법률 조문으로 규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전(前)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정하면서도 그 제출시기를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출 기한이 연구회의 내부규범인 정관에 맡겨지게 됨. 또한 안 제46조제3항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회와 연구기관 간 규정체계에도 차이가 있음.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회의 결산에 대한 적시성 및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제28조제1항의 결산서 제출기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29조(회계감사 등)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가 매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결산을 감사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는 연구회 감사의 결산감사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연구회 내부절차에 따라 결산서 작성·제

출,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연구회 감사의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운영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47조제1항은 연구기관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안 제29조는 연구회의 결산감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안 제67조는 연구회와 연구기관 모두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연구회의 결산결과도 공개대상에 포함되고 현재도 연구회가 매년 결산서 및 결산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안 제29조에 별도의 결산결과 공시규정을 추가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제3장 연구기관 규정(안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 제3장은 현행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조직·임원·예산·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연구회에 관한 규정 다음에 배치하고, 이를 제1절 설립·해산과 조직, 제2절 임원 및 제3절 예산·결산과 회계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는 현행법상 연구기관의 설립·정관·지역조직 및 해산 등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책무와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조직의 운영 효율화 또는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는 현행법상 원장과 그 직무, 원장의 임면·임기 및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의 수행 및 일부 감사업무의 원장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는 현행법상 연구기관의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회계원칙, 결산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분리·재구성하여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회계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제2장 연구기관</u> <u><신 설></u> <u>제8조(연구기관의 설립)</u>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u>제4조(법인격)</u>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u>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u>(이하 “<u>연구회</u>”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u>제8조(연구기관의 설립)</u>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u>제2항에</u>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u>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u>과학기술분야</u> 정	<u>제3장 연구기관</u> <u>제1절 설립·해산과 조직</u> <u>제30조(연구기관 설립)</u>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u>연구기관</u>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u>제3항에</u>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원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연구기관의 설립 및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31조(연구기관 설립 제한)</u>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u>연구기관</u>을 설립

현행	개정안
<u>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u> <u><신 설></u> <u>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목적</u> <u>2. 명칭</u> <u>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u>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u> <u>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u> <u>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u> <u>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 <u>8. 해산에 관한 사항</u> <u>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u>	하지 못한다. <u>제32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u> <u>② 연구기관은 과학기술혁신 활동 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그 연구개발성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문적 진실성을 확보하며, 그 국가·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u> <u>③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사업 등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제33조(연구기관 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목적</u> <u>2. 명칭</u> <u>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u>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u> <u>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u> <u>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u> <u>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 <u>8. 해산에 관한 사항</u> <u>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연구기관 부설기관) ①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통합, 해산 절차 및 법인전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연구기관 지역조직) ① 연구기관은 부설기관으로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성분석의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④ 연구회는 <u>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 ⑤ 그 밖에 <u>타당성조사</u>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u>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u>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④ 연구회는 <u>제2항에 따른 적정성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 ⑤ 그 밖에 <u>적정성분석</u>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실태조사 및 조직 정비 등) ① <u>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u>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에 부설기관의 운영 효율화,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연구기관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u>제65조에 따른 평가 결과</u>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u>제24조제2항제4호</u>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u>제11조</u>(원장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u>원장</u>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u>제21조제2항제7호</u>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2절 임원 <u>제38조</u>(원장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u>상근임원으로서 원장</u>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현행	개정안
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u>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任免)</u>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u>상임(常任)</u>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이사장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u>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u> 한다. ⑥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u> 연구회 이사회에서 <u>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u>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u>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u>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u>전담조직을 두어야</u>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u>자체감사</u>의 일	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제39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u>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u>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u>상임</u>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u>제2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u>착수하여야</u> 한다. ⑤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40조(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 제한)</u> 연구회 이사회에서 <u>제39조제2항에 따른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u>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u>제41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u> ① 연구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u>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u> 감사는 <u>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u> 수행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u>감사</u>의 일부를

현행	개정안
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u>자체감사</u>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u>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u> <u>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u>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u>감사</u>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u>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 <u>제3절 예산·결산과 회계</u> <u>제42조(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u> <u>제43조(연구기관 예산요구서 제출 등)</u>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u>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u>제5조제3항</u>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⑦ 연구기관은 <u>제6항</u>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u>제5조제3항</u>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	<u>제44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u> ①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u>제4조제3항</u>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은 <u>제1항</u>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u>제4조제3항</u>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

현행	개정안
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46조(연구기관 결산서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현행	개정안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47조(회계감사) ①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제1절 설립·해산과 조직(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 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는 연구기관의 설립·정관·지역조직 및 해산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을 이동·정비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책무 및 부설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회의

부설기관 실태조사 및 조직 정비 권한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설기관의 유형 및 설치·운영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환경 및 연구수요의 변화에 따라 연구기관의 조직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30조(연구기관 설립)**는 현행 제4조 및 제8조 등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기관의 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재구성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을 별표에 규정하고 연구기관의 법인격, 설립등기 및 설립·준비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체계화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31조(연구기관 설립 제한)**는 현행 제3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규정을 이동하여, 이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32조(연구기관의 책무)**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기관이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연구윤리와 연구개발성과의 학문적 진실성을 확보하며, 국가·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뢰를 확보할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기관이 국가의 출연을 받아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 연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33조(연구기관 정관)**는 현행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정관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여 정관의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34조(연구기관 부설기관)**는 신설되는 조항으

로, 연구기관이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단서에서 이사회 의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설기관의 설치·운영·통합·해산 절차 및 법인전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부설연구소 등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바, 부설기관의 법적 근거와 설치절차를 명시하여 연구기관이 새로운 연구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행 부설연구소는 주로 연구기관 정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4조제1항은 부설연구소 외의 부설기관의 경우 이사회 의결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단서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의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설연구소의 설치에도 연구회의 승인 및 정관 반영이 필요한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도 연구회의 승인을 받고 정관에 반영 중인바, 이러한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34조제2항의 부설기관 법인전환에 관한 규정은 앞서 안 제16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전환의 대상과 전환 후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3호는 부설기관에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는 법인전환이 가능한 반면 지역조직은 별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음.

- 또한 안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설연구소는 연구기관과 동일 법인에 속하는 조직이므로 별도의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같은 호에 따른 부설연구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개정안에는 전환된 법인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안 제34조제2항의 법인전환 대상을 부설연구소 등 법인 전환이 가능한 부설기관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법인전환의 요건·절차 및 전환 후 법적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35조(연구기관 지역조직)는 현행 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여, 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구회가 해당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적정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에서 직접 제시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의 주요 기준을 개정안에서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적정성분석의 기준 전반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12조의3제3항은 타당성조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에서 그 주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안 제35조제3항은 적정성분석의 기준 전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과 같이 적정성분석이 현행 타당성 조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라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 주요 분석기준은 현행과 같이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35조제3항과 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서로 중복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12조의3은 제3항에서 타당성조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5항에서 그 밖의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각각의 위임사항을 구분하고 있음.

- 반면 안 제35조제3항은 적정성분석의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

항에서 다시 “그 밖에 적정성분석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양 규정의 위임범위가 중복됨.

- 따라서 적정성분석의 기준과 절차·방법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36조(실태조사 및 조직 정비 등)**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에 부설기관의 운영 효율화·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부설기관의 설치 이후에도 그 운영현황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구환경이나 정책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36조**에 따른 부설기관의 운영 효율화·폐지 요구는

연구기관의 조직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그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6조는 실태조사 및 분석의 기준이나 부설기관의 운영 효율화·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요구를 받은 연구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연구회의 요구에 일정한 실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 안 제3조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관한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때, 연구회가 부설기관의 폐지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분석의 기준과 조직 정비 또는 폐지 요구의 요건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운영 효율화 또는 폐지 요구 과정에서 해당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및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해당 연구기관이 실태조사 결과나 폐지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부설기관의 운영 효율화·폐지 등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개선방안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37조(연구기관 해산 등)**는 현행 제17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여 연구기관의 해산사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산명령, 청문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해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연구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조문의 이동에 맞추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면서 현행 해산제도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제2절 임원(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 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는 원장과 그 직무, 원장의 임면·임기 및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제한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을 이동·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16조에 따른 연구기관 자체감사 관련 규정을 안 제22조의 감사위원회 제도와 연계하여 재구성하려는 것임.
- 원장의 직무와 임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38조(원장과 그 직무)는 현행 제11조에 따른 원장과 그 직무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여, 연구기관에 상근임원으로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이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경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경영목표의 제출·승인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제11조에 따른 원장의 구성·직무와 경영목표 제출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면서, 제1항에 원장이 상근임원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39조제3항에서도 원장을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이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39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는 현행 제12조에 따른 원장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여, 원장을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공개모집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선임절차에 착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의 원장 임면 및 임기 등에 관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39조제4항의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 착수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다소 어색하므로, 최근 개정된 현행 제12조제5항과 같이 절차에 직접 착수하도록 하는 문장구조로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40조(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 제

한)는 현행 제12조의2에 따른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 제한 규정을 이동하여, 연구회 이사회에서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인 사람은 해당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41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현행 제16조에 따른 연구기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의 감사기구와 연계하여 재구성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연구회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사장이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의 업무·회계에 대한 감사를 안 제22조에 따른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감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사장이 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임받은 원장은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원장에게 위임된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별로 두도록 한 전담조직은 개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안 제22조에 따른 감사단이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재구성하였음.

- 감사위원회를 연구기관 감사의 원칙적인 수행주체로 명확히 하면서 원장에게 일부 감사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감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41조제2항은 안 제41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감사의 일부를 이사장이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사의 수행주체와 위임권한의 주체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감사의 범위와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행 제16조제2항에도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연구회가 자체감사의 수행주체인 반면 개정안은 감사위원회를 감사의 수행주체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특히 원장은 연구기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감사와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자율적인 내부감사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사장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에게 일부 감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와 이사장 간 권한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감사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 또는 연구회의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3절 예산·결산과 회계(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 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는 현행 제6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기관의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회계원칙, 결산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문으로 분리·재구성하려는 것임.
-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와 사업계획 승인, 결산 및 회계감사 절차를 조문별로 체계화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42조(사업연도)는 현행 제6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을 이동하여 연구기관의 사업연도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43조(연구기관 예산요구서 제출 등)**는 현행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에 관한 규정 중 예산요구 단계의 절차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정비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기준을 연구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연구회의 심의·조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총괄 제출 등에 관한 현행 절차를 유지·정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44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는 현행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정비하려는 것임.

- 연구기관이 국가 예산 성립 후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된 예산 또는 사업

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절차를 유지하는 등 현행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정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45조(회계원칙)**는 현행 제14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회계원칙을 이동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연구기관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46조(연구기관 결산서 제출)**는 현행 제15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결산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이동·정비하여, 연구기관이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연구회가 승인된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 제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회 제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제15조에 따른 연구기관 결산서의 작성·승인 및 제출절차를 현행 체계에 맞게 이동·정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47조(회계감사)**는 현행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기관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연구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며, 정부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그 밖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제16조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감사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정비하고, 회계감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4. 제4장 연구개발성과 확산(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제32조의2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평가, 정보제공,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4장은 이를 별도의 장으로 확대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확산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자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해충돌 특례, 기술지주회사·기술출자회사·산학 공동법인·연구자창업기업의 설립, 기술료 및 전용실시권 등에 관한 특례와 창업 후 직무발명 신고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u>제4장 연구개발성과 확산</u> 제48조(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정한다. 제49조(연구개발성과 확산 지원 등)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50조(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이해충돌 특례)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연구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 등”이라 한다)을 위해 소속 임직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제3호의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창업기업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현행	개정안
	2. <u>창업기업등에게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u> 3. <u>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u> ③ <u>연구회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의 연구개발성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u>
<u><신 설></u>	제51조(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① <u>연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52조(기술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특별법 등) ① <u>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출자회사(이하 “기술출자회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출자회사에 대하여</u>

현행	개정안
<신 설>	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산학 공동법인 설립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융합연구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자본, 현물 및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기술 등을 포함한다)를 출자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기준, 출자의 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조(연구자창업기업 설립 등) ① 연구기관 소속 직원은 단독 또는 공동(다른 연구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이하 “연구자창업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현행	개정안
<신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창업기업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2. 소속 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③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은 연구자창업기업에 참여하고 주식 등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 임원이 연구자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연구자창업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발전 등에 기여한 연구기관 임직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연구자창업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창업 특례 등) ① 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연구자창업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대체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 기술출

현행	개정안
<신설>	자회사, 연구자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술에 대해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해당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구기관은 허락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은 연구성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대체 징수의 기준·범위·절차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창업 후 직무발명 신고 등) 연구기관 임직원은 예비창업기간, 창업휴직 및 겸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구기관 관련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사실을 연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는 현행 제3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확대·체계화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자 창업 및 창업기업 지원에 이르는 제도적 기반과 각종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의 출연을 바탕으로 창출한 연구개발성과가 논문·특허 등의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연구자가 직접 사업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48조(연구개발성과 소유)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¹⁵⁾에 따

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르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규정인바, 안 제48조의 적용대상이 같은 법 제16조가 적용되는 연구개발과제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49조(연구개발성과 확산 지원 등)은 현행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을 확대·정비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의 기술평가, 정보제공,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일반적인 지원시책 규정을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관한 별도의 장으로 확

-
-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하고,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구체적인 사업화·창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49조제2항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규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의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16)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안 제49조제2항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17)에 따라 전담조직 설치의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1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

무가 적용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연구회는 같은 항의 의무설치 대상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양 법률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산업통상부도 안 제49조제2항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산업통상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이 과기출연기관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이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설치 근거를 이 법에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둘째, 안 제4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

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위임하려는 것인지 법률에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바, 실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별도의 위임 필요성이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50조(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이해충돌 특별)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속 임직원의 유상 노무·자문, 직무 관련 지식·정보의 유상 제공 및 직위 취임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

공기술의 이전·사업화 및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50조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0조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20239호)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동일한 제도에 대하여 국회가 최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법내용을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안 제50조 역시 해당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문언과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지주회사·기술출자회사·산학 공동법인 및 연구자창업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도 연구기관에서는 관련 법률 및 기관별 규정 등에 따라 연구성과 사업화 및 연구자 창업을 위한 기업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설립형태 기준으로 연구원 창업기업 400개, 기술출자회사 292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6개 등 설립형태별 기업 수를 합산하면 총 728개이며, 설립형태가 중복된 기업을 제외한 실제 기업 수는 총 713개임. 이 중 산학 공동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6개임.

<연구기관별 연구성과 사업화·창업기업 설립 현황>

(단위: 개)

기관명	설립형태			합계		산학 공동법인 해당 기업 수
	연구원 창업기업	기술출자 회사	신기술창 업 전문 회사	설립형태 기준	기업 수 기준	
KIST	26	5	30	61	59	2
기초연	1	13	1	15	14	-
생명연	32	12	2	46	45	-
KISTI	3	4	-	7	7	-
한의학연	3	2	-	5	5	-
생기원	43	13	-	56	56	-
ETRI	139	109(1)	1	249	240	3
국보연	6	3	-	9	9	-
건설연	22	5	-	27	26	-
철도연	7	-	-	7	7	-
표준연	17	12	-	29	29	-
식품연	6	-	-	6	6	-
김치연	-	1	-	1	1	-
지자연	1	8	-	9	9	-
기계연	7	22(1)	-	29	27	-
에너지연	19	21	-	40	40	-
전기연	15	39(3)	1	55	53	-
화학연	14	6	-	20	20	-
독성연	2	1	-	3	3	-

기관명	설립형태			합계		산학 공동법인 해당 기업 수
	연구원 창업기업	기술출자 회사	신기술창 업 전문 회사	설립형태 기준	기업 수 기준	
원자력연	32	9	-	41	41	1
재료연	2	11(3)	1	14	13	-
핵융합연	3	-	-	3	3	-
합계	400	292(4)	36	728(4)	713	6

* 설립형태가 중복인 경우 모두 포함하되, 기업 수 기준 합계에서 제외
(연구원 창업기업-기술출자회사 중복 : 14건 / 기술출자회사-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중복 : 3건 / 연구원 창업기업-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중복 : 2건)

** 복수의 연구원 공동 창업기업의 경우 기관별 설립형태 및 합계에서 모두 제외 (공동 창업 기업 수는 괄호 안에 표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이미 연구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사업화·창업 형태에 관한 관련 근거와 절차 등을 이 법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안 제51조(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기관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시행예정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5월 26일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10호¹⁸⁾

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1681호)」(2026.5.26. 공포, 2026.11.27. 제2조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공립 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

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변경하였으므로, 안 제51조제1항의 관련 명칭도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산업통상부는 안 제51조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산업통상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기술지주회사 및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9.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0.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

일한 내용을 이 법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안 제52조(기술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특례 등)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기술출자회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출자회사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사업화를 위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사업화의 선택지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52조제2항의 세제 지원 규정은 조세특례에 관한 일반 법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¹⁹⁾는 조세특례를 같은 법 및 같은 조

19)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재정경제부도 개별법에 포괄적인 세제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조세특례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실제 지원이 가능한 세목과 관련 세법을 고려하여 안 제52조제2항의 지원주체와 지원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52조제3항에서 기술출자회사와 관련된 나머지를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음.

- 기술출자회사의 설립주체, 출자 범위, 지분구조 및 운영 등은 연구기관의 재산과 연구개발성과의 처분에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법률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설립·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위임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같은 조 제1항은 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임에도 기술출자회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53조(산학 공동법인 설립 등)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융합연구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자본·현물 및 연구개발성과 등을 출자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인의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연구역량과 기술·인프라를 결합하여 융합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이 참여하는 공동법인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의 조직·회계 및 감독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²⁰⁾에 따라 대학이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그 업무, 수입·지출 및 회계관리 등이 같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연구기관과 산학협력단이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관리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이에 교육부는 연구기관이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요청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학협력단이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회계·운영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산학 공동법인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기존 산학협력단의 회계·운영 및 감독체계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적용관계와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54조(연구자창업기업 설립 등)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 또는 다른 연구기관의 직원과 공동으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연구자창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제한사유, 연구기관 임직원의 창업기업 참여 및 주식 등 대가 수령, 주식매수권 부여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창업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54조 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²¹⁾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단독 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이 창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관의 창업 관련 내부규정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

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창업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출자, 시설·장비·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산업통상부도 안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은 같은 법 제25조의3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법률에 규정된 일반적인 창업 허용·제한 및 내부 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반복하기보다는, 다른 연구기관 직원과의 공동창업을 명확히 하거나 연구기관 임직원의 주식 등 대가 수령 및 주식매수권 부여 등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54조제4항은 연구자창업기업의 법인형태와 주식매수권 부여규정 간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4조제1항은 연구자창업기업을 별도의 법인형태를 정하지 않은 “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은 “주주총회”, “주식”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회사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연구자창업기업의 법인형태를 주식회사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지분 취득 등의 방법을 달리 규정할 것인지 검토하여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55조(창업 특례 등)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기술출자회사 및 연구자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대체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 등을 우선적으로 허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해당 기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허락조건을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기관의 시설물을 연구성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자 창업 과정에서 기술료 부담이나 기술의 실시방식 등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고 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산업통상부는 안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또는 기존 규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고 있음.

- 먼저, 산업통상부는 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이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통상실시 원칙²²⁾을 전제로 한 특례이나, 2026년 5월 26일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²³⁾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양도하거나 전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제9조제3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가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날부터 1년(신속한 기술이전·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1681호)」(2026.5.26. 공포, 2026.11.27. 제24조 시행)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을 통하여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 때에는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술료 및 사업화 지원비용은 현금, 어음, 주식, 채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의 통상실시 원칙도 폐지될 예정이므로 제2항 및 제3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안 제55조제4항과 관련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3항이 이미 공공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본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창업기업에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기관이 보유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임.

- 따라서 시행예정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안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⑦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⑧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조건, 기술료의 징수 및 사업화 지원비용의 수취, 제6항에 따른 우선권, 제7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으로, **안 제56조(창업 후 직무발명 신고 등)**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기관 임직원이 예비창업기간, 창업휴직 및 겸직 기간 중에 발생한 연구기관 관련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 사실을 연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발명진흥법」 제12조²⁴⁾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에 휴직·겸직하는 연구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의 직무와 창업기업에서의 활동이 중첩될 수 있어 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해당 기간 중 연구기관과 관련된 발명을 별도로 알리도록 하여 직무발명 여부 및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과 직무발명 해당 여부의 판단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6조**는 “연구기관 관련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 사실을 신

24)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인지 여부를 연구자가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통지 누락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예비창업·창업휴직·검직기간에 발생한 발명 중 연구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연구기관에 알리고, 이후 「발명진흥법」 및 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해당여부와 권리귀속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신고대상과 판단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안 제56조는 예비창업기간 중의 발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문 제목의 “창업 후”를 조문의 적용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예비창업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발명진흥법」 제12조가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56조의 “신고”를 “통지”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제5장 개방형 혁신 기반 구축(안 제57조 및 제58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 제5장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소속 직원의 파견·겸직·휴직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산업계·학계 등 외부기관과의 인력 교류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 안 제57조(인력 교류 확대)는 현행 제32조를 확대·정비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인력 간 교류·소통·협력 등의 촉진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현행과 같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58조(파견, 겸직 및 휴직 등에 관한 특례)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파견 및 영리 목적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기술출자회사·연구자창업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겸직·겸임 및 이에 따른 복직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등)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협동·융합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u><신 설></u>	<u>제5장 개방형 혁신 기반 구축</u> 제57조(인력 교류 확대)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협동·융합연구개발의 성과 제고, 연구지원의 효율적 추진 및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인력 간 교류·소통·협력 등의 촉진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8조(파견, 겸직 및 휴직 등에 관한 특례)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직무 능률을 저해하지 않을 것

현행	개정안
	2. 이해충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을 말한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소속 직원을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연구자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직·겸직 또는 겸임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휴직 중인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휴직 기간의 종료,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연구자창업기업 등의 폐업, 인수 및 합병, 지분의 양도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에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복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57조 및 제58조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내부의 인력교류를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계·학계 등 외부기관과의 파견·겸직 및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휴직·겸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연연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기술 융합이 확대되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기업·대학 등 외부기관 간 인적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의 유연한 이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57조(인력 교류 확대)는 현행 제32조를 확대·정비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인력 간 교류·소통·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이 협동·융합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연구성과 제고, 연구지원의 효율성 및 인력 전문성 강화 등으로 인력교류의 목적과 형태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57조제2항은 현행 제32조제2항과 동일하게 연구기관의 인력교류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산·학·연 간 협력 및 국내외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기업·대학·산학협력단·해외 연구기관 등과의 인력교류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 다음으로, 안 제58조(파견, 겸직 및 휴직 등에 관한 특례)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외부기관 파견 및 영리 목적의 겸직을 허용하고, 기술지주회사·기술출자회사·연구자창업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겸직·겸임과 복직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겸직 및 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등에 관한 일반적인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겸직 및 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
관연구기관 인력교류 규정」 등 연구회 규정 및 기관별 내규에
따라 파견·휴직·겸임·겸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의2²⁵⁾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을 통해 2026년 6월 기
준 10개 연구기관에서 총 61명의 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²⁶⁾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²⁷⁾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
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관련 전문연구기관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
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
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
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
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
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등을 위한 휴직·겸직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연구기관별 중소기업 파견 현황 >

(2026. 6. 기준, 단위: 명)

구분	생기	ETRI	국보	식품	지질	기계	재료	에기	전기	화학	합계
지원인력	20	14	3	2	1	8	2	4	6	1	61
정규직	-	-	3	-	-	-	-	-	-	-	3
기업지원 연구직*	20	14	-	2	1	8	2	4	6	1	58

* 동 사업을 위해 각 연구기관에서 정원 외 별도직군으로 채용된 인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와 같이 현행 제도에서도 개별 법률 및 기관별 규정에 따라 파견·겸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용대상과 요건이 개별 법률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겸직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휴직 등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2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58조제1항의 파견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8조제1항은 소속 직원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등”을 통해 다른 기관에 대한 파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파견대상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파견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파견대상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견대상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58조제1항에 따른 영리 목적 겸직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8조제1항은 직무능률을 저해하지 않고 이해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소속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리 목적 겸직이 연구개발·기술이전 및 연구성과 사업화와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²⁸⁾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겸임·겸직을 허용하면서 전공·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이거나 직무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안 제58조제1항은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 등 소속 직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업무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

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요가 있음.

- 또한 겸직 허용기간을 별도의 상한이나 기준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겸직기간은 소속 직원의 복무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법률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위임범위와 형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58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휴직·겸임·겸직 제도와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4²⁹⁾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기술지주회사·출자회사

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겸임·겸직
과 그 기간, 허가 제한사유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

-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³⁰⁾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안 제58조제2항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모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겸직·겸임을 허용하면서도 휴직기간, 허가 제한사유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휴직·겸임·겸직에 관한 사항은 정비하고, 연구회 소속 직원 등 기존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출연연의 특성상 별도의 특례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제6장 과학기술 인재 역량 강화(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 활용과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행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확대·정비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안 제59조는 우수연구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60조는 박사후연구원·석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인턴 등 연수직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대학원대학 관련 규정을 각각 안 제61조 및 제62조로 이동·보완하면서 대학원대학의 명칭을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법률에 명시하고, 안 제63조를 신설하여 설립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임직원의 교원 임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6장 과학기술 인재 역량 강화</u> <u>제59조(우수연구원 선정 등) ① 연구기관은 기관의 발전에 기여가 큰 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을 목적으로 소속 직원을 우수연구원(이하 “우수연구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u><신 설></u>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	② 우수연구원의 정년, 선정, 처우, 운영 및 취소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0조(연수직 연구원 활성화) ① 연구기관은 주요 임무 분야의 신진 인력 양성 및 성장 경로 제공을 위해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 등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하 “연수직 연구원”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수직 연구원이 차별받지 않고 건전한 연구문화에서 연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연수직 연구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가 정한다. 제61조(대학원대학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산업혁신을 주도할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이하 “국가연구소대학”이라 한다)라 한다. ③ 국가연구소대학은 제1항에 따른

현행	개정안
<u>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u>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u>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u>대학원대학의</u>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대학원대학에</u>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u>연구기관의</u>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u>연구기관</u>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u>대학원대학의</u>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u>대학원대학의</u>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u>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u>) ① <u>대학원대학에</u>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u>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다른 기관</u>을 지정하여 국가연구소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u>국가연구소대학의</u>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국가연구소대학에</u>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u>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u>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⑥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u>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u>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u>국가연구소대학의</u>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u>국가연구소대학의</u>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2조(<u>국가연구소대학 학위과정 등</u>) ① <u>국가연구소대학에</u>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교과 및 학생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현행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신설>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연구소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제63조(국가연구소대학 교원) ① 국가연구소대학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국가연구소대학은 인력양성을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참여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소속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원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⑤ 교원의 구분, 자격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경력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신진 연구인력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학원대학의 특성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 출연연구기관이 연구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활용과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적기반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59조(우수연구원 선정 등)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기관이 기관 발전에 기여가 큰 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을 목적으로 소속 직원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연구원의 정년·선정·처우·운영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제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수한 연구인력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우수연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직 정원의 3% 이내에서 우수연구원을 선정하고 62세 이상 우수연구원의 수는 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2025년 12월 말 기준 23개 연구기관 중 20개 기관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총 445명의 우수연구원이 선정·운영되고 있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3개 기관은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임.

< 연구기관별 우수연구원 제도 운영 현황 >

(2025년 말 인원기준, 단위 : 명)

기관명	제도 도입시기	'25년 정원		우수연구원 운영인원			
		전체	연구원 (A)	정년 연장 (62~65세) (B)	정년 전 (61세 이하)	계	비율 (B/A)
계	20개 기관	14,932	9,524	288	157	445	3.0%
KIST	'12.07	985	626	27	23	50	4.3%
NIGT	'24.12	67	48	-	-	-	-
기초연	'15.11	413	177	5	6	11	2.8%
생명연	'15.03	677	265	15	10	25	5.7%
KISTI	'12.12	560	322	-	-	-	-
한의학연	'13.12	333	164	1	2	3	0.6%
생기연	'22.11	1,157	876	-	-	-	-
ETRI	미도입	2,290	1,865	-	-	-	-
국보연	미도입	538	458	-	-	-	-
건설연	'12.12	711	536	9	6	15	1.7%

기관명	제도 도입시기	'25년 정원		우수연구원 운영인원			
		전체	연구원 (A)	정년 연장 (62~65세) (B)	정년 전 (61세 이하)	계	비율 (B/A)
철도연	'13.11	394	272	9	14	23	3.3%
표준연	'14.04	517	310	18	11	29	5.8%
식품연	'16.12	323	145	5	6	11	3.4%
김치연	'15.10	103	71	-	-	-	-
지자연	'14.10	536	335	20	7	27	6.0%
기계연	'13.09	538	371	15	16	31	4.0%
에기연	'14.12	566	329	14	11	25	4.3%
전기연	'12.12	690	285	19	8	27	6.7%
화학연	'14.12	637	368	27	8	35	7.3%
독성연	'14.12	357	139	3	1	4	2.2%
원자력연	'14.12	1,705	1,114	91	20	111	8.2%
재료연	'16.11	414	240	10	8	18	4.2%
핵융합연	미도입	421	208	-	-	-	-

※ (운영 가능규모) 당해연도 정규 연구원 정원의 10% 이내

※ (운영비율) ① 도입기관(20개) 기준 7.5% / ② 운영기관(18개) 기준 7.9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수연구원 제도는 이미 상당수 연구기관에서 장기간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별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고경력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우수연구원의 선정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수연구원 제도는 연구직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선정인원과 운영한도 역시 연구직 정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반면, 안 제59조제1항은 우수연구원의 선정대상을 별도의 직종 제한 없이 연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직·기술직·지원직 등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재 우수연구원 제도는 연구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안 제59조가 고경력 연구자를 활용하려는 현행 우수연구원 제도를 범제화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에 맞게 선정대상을 연구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60조(연수직 연구원 활성화)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기관이 주요 임무 분야의 신진인력 양성과 성장경로 제공을 위하여 박사후연구원·석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인턴 등 연수직 연구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이 연수직 연구원의 연구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도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

영에 관한 규정」 및 연구회 내부규정 등에 따라 연수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7,517명의 연수직 연구원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

< 연수직 연구원 운영 현황 >

(2025.12월 말 기준, 단위: 명)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	총계
1,694	519	4,182	1,122	7,517

※ 연수직은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으로 구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특히 현행 운영규정에서도 연구기관이 주요 임무 분야의 신진 인력 양성 및 성장경로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연수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회가 연수직의 선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학위취득 과정이나 한시적인 연구역량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이미 다수의 연수직 연구원이 연구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양성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고 연수직 연구원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안 제60조의 취지는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61조(대학원대학 설립)**는 현행 제33조를 이동
 - 보완하여,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산업 혁신을 주도할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칭을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설립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 현행 제33조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UST는 2003년 10월 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2004년 3월 개교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19개와 그 밖의 정부출연연구기관 8개 등 총 2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임.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설립 현황 >

구분	내용
기관명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2003년 10월 대학 설립인가, 2004년 3월 개교
설립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설립주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등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참고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설립기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UST 운영 현황 >

구분	현황	세부내용(2026.6월 기준)
교원	1,782명	교원 1,548명, 기타(검임교원 등) 234명
학생	1,685명	박사과정 614명, 통합과정 635명, 석사과정 436명
졸업생	4,319명	박사 1,864명, 석사 2,455명
직원	96명	총장 1명, 행정직 80명, 계약직 등 15명
전공 현황	45개 전공	출연연 연구 미션 기반 다학제 융·복합 전공 운영(AI, 양자정보, 첨단바이오, 항공우주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국가연구개발 현장을 교육에 활용하는 UST의 특성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전문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구체화하려는 방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안 제6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대학의 교명 변경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 사항이므로, 개별 대학의 교명을 법률에서 직접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학 인가체계 및 고등교육 행정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명 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특히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이미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2026년 5월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음.
- 현행 제33조제1항 역시 대학원대학의 설립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은 이 법과 함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행정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변경인가가 필요한 기존 대학의 교명을 개별 법률에서 직접 변경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변경인가 절차 및 그 심사결과를 사실상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 변경은 우선 「고등교육법」에 따른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 제61조제2항에서 교명을 직접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 제6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안 제62조·제63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연구소대학”이라는 명칭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62조(국가연구소대학 학위과정 등)는 현행 제33조의2를 이동·정비하여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설치,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교과·학생정원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제33조의2와 비교하면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서 삭제하였는데, 이는 안 제63조에서 국가연구소대학 교원의 임용·자격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데 따른 체계 정비로 볼 수 있음. 그 밖의 내용은 현행 제도를 대체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61조제2항의 교명 변경 여부에 따라 안 제62조의 조문명 및 각 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연구소대학”이라는 명칭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63조(국가연구소대학 교원)**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국가연구소대학에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필요한 경우 강사·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설립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원소속기관의 지위를 유지한 채 국가연구소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해당 교원은 원소속기관의 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으로 인정하며, 구체적인 교원의 구분·자격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UST는 개별 대학이 독자적인 연구시설과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대학원대학과 달리, 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전문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장비 및 실제 국가연구개발 현장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현재도 1,500명이 넘는 교원이 이러한 출연연 기반 교육체계에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설립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임직원이 원소속기관의 지

위를 유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교육에 활용하고,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안 제63조제4항에 따라 이들을 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교육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는 국가연구소 기반 대학원대학의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원 확보에 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63조의 내용은 국가연구소 기반 대학원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교육·연구 운영체계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두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61조제2항의 교명 변경 여부에 따라 조문명 및 “국가연구소대학”이라는 용어는 연동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7. 제7장 평가·진단 및 운영(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평가·경영 혁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연구회에 대한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경영공시, 임원의 청렴의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및 내부규정 관리 등 책임경영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안 제64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회의 연구기관 지원·관리 및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안 제65조는 현행 제28조에 따른 연구기관 평가제도를 이동·정비하면서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점검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경영혁신, 경영공시, 임원의 청렴의무 및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0조는 현행 제10조의2에 따른 운영지침의 적용대상을 연구회까지 확대하며, 안 제71조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경영혁신)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과 자체 역량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규정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경영공시)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기관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연구기관에</u>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u>연구기관 및 연구회에</u>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u>연구기관의</u>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u>건강한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제70조(운영지침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연구회 및 연구기관에</u>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u>연구회 및 연구기관에</u>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u>연구회 및 연구기관의</u>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내부규정 운영·개선) ① <u>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법령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 내에서 기관 내부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u> ② <u>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법령의 변경 및 기관 내·외부 사정의 변경을 반영하여 매년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평가·경영 혁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연구회 평가, 경영공시, 임원의 청렴의무, 합리적인 복리후생제도 운영 및 내부규정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 특히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2024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종전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경영관리체계에서 벗어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였음. 현행 운영규정에는 조직·경영진단, 경영공시, 임원 청렴의무, 복리후생제도 및 내부규정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전후와 개정안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전후 내부통제체계 비교 >

구분	공공기관 지정 당시	지정 해제 후 현행 체계	개정안	주요 변화
기관평가	○ (성과평가법 · 과기출연기관 법)	○ (성과평가법 · 과기출연기관 법)	○ (성과평가법 · 과기출연기관 법)	기본체계 유지
경영공시	○ (공운법)	○ (출연연 운영규정)	○ (안 제67조)	현행 출연연 공시체계 법제화
통합공시	기획재정부 운영	연구회 운영	연구회 운영	통합공시 운영주체 변경
불성실공시 조치	기획재정부 점검 · 누적 벌점	연구회 점검 · 수정 · 보완 및 기관평가 반영	연구회 점검 · 수정 · 보완 및 기관평가 반영	출연연 평가체계와 연계
임원 청렴계약	○ (공운법 및 관련 지침)	○ (출연연 운영규정)	○ (안 제68조)	법제화
복리후생 · 경 영혁신 · 조직 · 인사 · 예산 · 회계 관리	공운법 및 관련 지침	출연연 운영규정	안 제66조 · 제69 조 · 제70조 등	출연연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내규 정비	별도 규정 없음	○ (출연연 운영규정)	○ (안 제71조)	법제화
관리 · 감독	기획재정부 중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연구 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연구 회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관리체계 전환

※ 개정안 시행 이후의 구체적인 운영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에 따른 계획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와 같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도 기관평가 등의 통제장치가 유지되고 있으며, 경영공시 · 청렴의무 · 복리후생 · 조직 및 인사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운영규정을 중심으로

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 가운데 경영
공시, 청렴의무 및 복리후생제도 등 주요 내부통제 장치를 법률
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배제 등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64조(연구회에 대한 평가)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회의 연구기관 지원·관리 및
각종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체계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회 자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근거는 별도로 두
고 있지 않음.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 기능
조정, 평가, 감사, 협동·융합연구 지원 등 상당한 권한과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회 자체의 사업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회
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회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
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64조제3항은 연구회에 대한 평가 절차·기준·방식 및 결과 활용과 함께 “부설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설기관의 설립·운영 자체는 연구회 평가의 절차·기준 등에 관한 위임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부설기관의 운영상황을 연구회 평가의 한 요소로 포함하려는 취지라면 평가기준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안 제64조제3항의 위임대상을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65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현행 제28조를 이동·정비하여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연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점검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연구기관 평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도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연구보안 평가는 종전 격년

단위에서 202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기관평가의 경영부문 중 기관공통관리역량 지표 등에 활용되고 있음.

- 또한 현행 제28조제3항은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내용·대상 등에 대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안 제21조제2항제8호에 따라 연구기관 평가지침 자체가 연구회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고 해당 평가지침에 출자법인의 경영에 관한 평가사항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이사회 의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은 평가절차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제28조제2항은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 제65조제3항은 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직접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있음. 이는 실제 평가절차³¹⁾에 맞추어 제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31)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상위평가를 거치며, 그 상위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8조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66조(경영혁신)**는 현행 목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 자체 역량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회에 관련 규정의 제정이나 혁신수준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도 연구기관이 조직구조·기능 및 인력 등에 대한 조직·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연구회가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대한 조직·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안 제66조는 이러한 경영혁신의 기본방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원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조직 및 기능 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67조(경영공시)**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회가 주요 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조문은 연구회까지 경영공시 주체로 포함하는 점에서 현행 운영체계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됨.

- 연구기관은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알리오(ALIO)를 통해 경영정보를 공시하였으나, 지정 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출연연 포털을 이용한 별도의 경영공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지정 당시와 현행 제도 및 개정안의 경영공시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안 제67조 경영공시체계 비교 >

구분	공공기관 지정 당시	지정 해제 후 현행 제도	개정안 시행 시 (과기정통부 계획)
법적 근거	「공운법」 제11조·제12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안 제67조
공시 주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연구회 + 연구기관
통합공시 운영 주체	기획재정부	연구회	연구회
공시항목*	48개	55개	55개
정기·수시공시	정기 32개 / 수시 16개	정기 42개 / 수시 13개	정기 42개 / 수시 13개
공시기한	연간·반기·분기별 / 수시 14일 이내	정기 4월 말 / 수시 14일 이내	정기 4월 말 / 수시 14일 이내
사실 확인	작성·부서장 확인·감사부서 검증	작성·공시총괄 부서장 확인·감사부서 검증	좌동
불성실공시 조치	기획재정부 점검·누적 벌점	연구회 점검·수정·보완 지시·기관평가 반영	좌동
정정공시	오류·변경사항 발생 시	오류·변경사항 발생 시	오류·변경사항 발생 시
임원 책임	경영평가 반영	기관평가 반영	기관평가 반영
공개 시스템	알리오	출연연 포털	출연연 포털

* 참고3: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공시항목 비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경영공시의 운영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연구회로 변경되고 공시시스템도 알리오에서 출연연 포털로 변경되었으나, 공시항목은 종전 48개에서 현행 55개로 확대되었고 사실 확인·불성실공시 점검 및 기관평가 연계 등 별도

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안 제67조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경영공시체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연구회까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안 제11조에 따라 연구회 및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도 종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공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별도의 법정 공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지정 배제에 따른 내부통제 보완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
- 안 제67조제2항이 통합공시를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의무로 규정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통합공시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체계와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68조(임원의 청렴의무 등)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임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상근 임원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임.

- 현제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³²⁾에 따라 연구기관 임원의 청렴의무 및 직무청렴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연구회가 임원 청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직무청렴계약 운영에 관한 공통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68조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규정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임원 청렴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적용범위를 연구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과 윤리경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8조(임원의 청렴의무 등) ① 연구기관의 임원은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기관은 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직무청렴계약(이하 "임원 직무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경영윤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원 직무청렴계약의 체결·운영 및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구기관"으로 본다.

④ 연구회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임원 청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청렴계약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혁신지침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안 제69조(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학기술 역량 증진·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운영규정에서도 연구기관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연구회가 퇴직금·교육비·보육비·의료비·휴가·휴직·노사관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관한 공통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9조**는 이러한 현행 관리체계의 기본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연구회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70조(운영지침 통보)**는 현행 제10조의2를 이동·보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직·정원·인사, 예산·회계, 경영혁신 및 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제10조의2는 운영지침을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70조는 이를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운영지침의 적용대상을 연구회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 밖의 운영지침의 내용은 현행 규정과 대체로 동일함.

- 연구회 역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연구기관 지원·관리, 자체 사업, 조직·인사 및 예산·회계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회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71조(내부규정 운영·개선)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법령 등의 범위에서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및 기관 내·외부 사정의 변경을 반영하여 매년 내규를 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³³⁾는 연구회 이사장과 연구기관의 장이 관련 법령

3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0조(내부규정 등의 개정) ① 원장등과 연구회 이사장은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및 연구환경 등

· 정부정책 및 연구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내부규정·지침 등을 매년 보완·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 정비상황을 점검하여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부규정이 상위 법령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규정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71조제2항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매년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이나 기관의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고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규까지 매년 형식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연구회 및 각 연구기관에는 인사·복무·회계·연구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다수 내부규정이 존재하므로, 내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는 입법취지는 매년 개정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매년 내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개정하

의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하는 내부규정·지침 등을 매년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지침 등이 제1항에 따라 충실히 보완·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71조제2항의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8. 보칙 및 벌칙(안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으로 정하고 업무의 위탁, 비밀유지 의무, 동일 명칭 사용 금지,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의 준용,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및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 가운데 안 제75조는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의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77조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유지하면서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적법한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 활동을 직무관련 수뢰로 보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있음.

- 안 제79조 및 제80조는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4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 제75조의 동일 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은 현행과 동일하며, 안 제75조제3항의 신설에 따라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 명

칭의 무단사용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됨.

현행	개정안
<u>제4장 보칙</u> <u>제29조(감독관청 등) ①</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연구기관 및 연구회의</u>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연구회와 연구기관의</u>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u>제30조(업무의 위탁) ①</u> <u>연구기관 및 연구회</u>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u>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u>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u>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u>제30조</u>에 따라 <u>연구기관 및 연구회의</u>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②</u>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u>제8장 보칙</u> <u>제72조(감독관청 등) ①</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연구회 및 연구기관의</u> 감독관청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연구회 및 연구기관의</u>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u>제73조(업무 위탁) ①</u> <u>연구회 및 연구기관</u>은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74조(비밀유지 의무) 연구회와 연구기관의</u>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u>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u>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u>제73조</u>에 따라 <u>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의</u>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75조(동일 명칭 사용 금지) ①</u>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현행	개정안
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u><신설></u> <u>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u>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u>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u>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u><단서 추가></u> <u>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u>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u>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u>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u>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u>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u>제5장 벌칙</u> <u>제36조(벌칙)</u>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37조(과태료)</u> ① <u>제31조의2</u>를 위반한	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u>국가연구소대학이 아닌 자는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u>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u>제76조(준용규정) 연구회 및 연구기관</u>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u>제7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u>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u>다만,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u> <u>적법한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 활동은 직무관련 수뢰로</u> 보지 아니한다. <u>제78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u>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u>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u>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u>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원장</u>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u>제9장 벌칙</u> <u>제79조(벌칙)</u> 제7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80조(과태료)</u> ① <u>제75조</u>를 위반한 자

현행	개정안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는 현행법상 보칙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안의 체계에 맞추어 이동·정비하면서,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의 명칭 보호와 연구기관 임직원의 기술이전·창업 수익에 관한 공무원 의제의 예외를 추가하려는 것임. 전체적으로 현행 제도의 기본적인 감독·책임체계와 벌칙 수준은 유지되고 있음.
- 먼저, 안 제72조(감독관청 등)는 현행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이동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을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으로 하고,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회 평가 및 그 결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4조로 분리·이동되었으므로, 안 제72조는 현행 감독관청에 관한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73조(업무 위탁)은 현행 제30조를 이동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과 같은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74조(비밀유지 의무)는 현행 제31조를 이동하면서 전부개정안의 회계감사 및 업무 위탁 조문번호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연구회·연구기관의 임직원 및 퇴직자, 회계감사인과 수탁업무 수행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75조(동일 명칭 사용 금지)는 현행 제31조의2를 이동하면서, 안 제61조에 따른 국가연구소대학이 아닌 자가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 연구회와 연구기관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의 명칭을 다른 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75조제3항은 안 제61조제2항에서 대학원대학의 명칭을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61조제2항의 교명 법정화 여부를 재검토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안 제75조제3항 및 이에 연계된 안 제80조의 적용범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76조(준용규정)은 현행 제34조를 이동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과 같은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7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는 현행 제35

조를 이동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한편,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적법한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 활동은 “직무관련 수뢰”로 보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높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77조 단서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7조 단서는 연구기관 임직원이 안 제51조의 기술지주회사 및 안 제54조의 연구자창업기업에 참여하여 주식·지분 등 경제적 이익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정당한 기술이전·창업 활동에 따른 수익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대상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는 안 제51조 및 제54조의 경우 연구기관 임직원이 직접 주식·지분 등을 취득할 수 있어 개인에게 수익이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단서 신설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직무관련 수뢰”는 「형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³⁴⁾, 안 제77조 본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여러 뇌물죄를 포괄하여 적용하고 있어 단서에 따라 배제되는 형사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적법한 기술이전 또는 창업 절차에 따라 취득한 수익이라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이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것인지 등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당한 기술이전·창업 활동의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기술이전·창업을 형식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수익 활동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수뢰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오히려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불명확하게 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

34) 「형법」은 제129조에서 수뢰·사전수뢰, 제130조에서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에서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제132조에서 알선수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129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를 수뢰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관련 수뢰”라는 별도의 범죄유형이나 용어의 정의는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적법한 기술이전·창업에 따른 정당한 수익의 취득은 관련 조항에 따른 기술사업화·창업 제도를 통하여 보장하되,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범위에 관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안 제77조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78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는 현행 제35조의2를 이동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이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직무 관련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10일 이내에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임.

- 다만, 안 제78조의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원장”은 연구회에는 원장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79조(벌칙)은 현행 제36조를 이동하여 안 제74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과 동일한 법정형을 유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안 제80조(과태료)는 현행 제37조를 이동하여 안 제75조의 동일 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과태료의 수준과 부과체계는 현행과 동일함.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 제61조제2항의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 교명 규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안 제75조제3항과 함께 안 제80조의 적용범위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9. 부칙 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현행법 제33조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보고, 종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총장 및 교직원을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의 총장 및 교직원으로 임명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총장 및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에 임명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5개 장 46개 조의 법률을 9개 장 80개 조로 전부개정하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조직·운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인력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다수의 제도를 신설·개편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위법령과 연구회·연구기관의 정관 및 내부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전부개정법률안은 종전 법률의 본칙과 부칙을 전반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종전 법률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칙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연구자 창업 지원, 우수연구원 및 연수직 연구원 제도 등 다수의 제도를 신설·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 및 연구회·연구기관의 정관·내부규정 등의 정비가 필요함.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법 시행 전에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종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법적 연속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기존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립근거와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므로, 재산·채권·채무 등의 포괄적인 승계조항까지 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종전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와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을 각각 안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고,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그 잔여임기 동안 개정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도 개정법의 시행시기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21862호는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해당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전부개정법 시행 전에 해당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안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보도록 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대학원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자체는 필요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안 제61조에서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라는 명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여부에 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라는 명칭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보고,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법률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필요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반면, 구체적인 교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안 제61조에서 ‘대학원대학’으로만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교명 변경을 전제로 한 안 부칙 제2조를 정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을 안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종전 법률의 부칙 가운데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선별하여 전부개정안 부칙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법률 제18450호 부칙 제2조는 현행 제7조의 국유·공유재산 특례를 2021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계가

이 법 시행 당시에도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제7조가 안 제6조로 이동한 이후에도 그 적용효과가 유지되도록 부칙에 필요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은 현행 제36조 및 제37조의 벌칙·과태료 규정을 각각 안 제79조 및 제80조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법 적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전부개정법률의 경우 이러한 벌칙·과태료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 그 밖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인가·승인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의 조문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는 현행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직접 인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6조제2항제1호³⁵⁾는 현행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및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 안 제30조, 제12조 및 제61조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 밖에도 현행법의 개별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확인하여 부칙에서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별적인 인용조문 정비에서 누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236

3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자격)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참고1

연구기관 지역조직 현황

(총 63개, 2026. 7. 1. 기준)

연번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연도	위치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2003	강원 강릉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2008	전북 완주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센터	1992	서울
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1992	부산
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센터	1992	대구
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	1992	광주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1999	전북 전주
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서부센터	2014	서울
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2006	충북 청주
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2005	충북 청주
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006	전북 정읍
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	1969	서울
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산울산경남지원	1972	부산
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	1978	대구
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	1982	광주
16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응용센터	2015	대구
17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2018	전남 나주
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1999	서울
1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	1989	인천
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조기술센터(한시)	1989	인천
2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2007	경기 안산
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기술실용화본부	2004	광주
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기술실용화본부	2007	부산
2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기술실용화본부	2012	대구
2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한시)	2016	경북 고령
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항공시스템기술센터(한시)	2016	경북 영천
2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	2011	울산
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기술실용화본부	2015	강원 강릉
2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기술실용화본부	2011	전북 전주
3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기술실용화본부	2019	제주
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본부	2006	대구
3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	2001	광주
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도권연구본부	1997	경기 성남
3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2024	경기 성남

연번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연도	위치
3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남권지능화융합연구실(한시)	2015	울산
3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	2006	경기 화성
3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2009	경북 안동
3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실증연구센터	2019	경기 연천
3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완성차안전시험연구센터	2019	충북 청주
40	한국식품연구원	강릉연구실(한시)	2010	강원 강릉
4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2016	경북 포항
42	한국기계연구원	대경권융합연구본부	2010	대구
43	한국기계연구원	동남권기계연구본부	2013	부산
44	한국기계연구원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	2013	경남 김해
4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2011	제주
4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실증연구센터	2011	전북 부안
4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2018	광주
4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2019	울산
49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	2007	경기 안산
50	한국전기연구원	의왕분원	1988	경기 의왕
51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본부	2020	광주
52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고효율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센터(한시)	2026	경남 김해
53	한국화학연구원	그린정밀화학연구센터	2012	울산
54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2016	울산
55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2023	전남 여수
56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2005	전북 정읍
57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	2013	경북 경주
58	한국재료연구원	부안풍력시험동	2011	전북 부안
59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2017	서울
60	한국재료연구원	소재혁신선도본부(한시)	2020	대전
6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2012	전북 군산
62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2008	전북 정읍
63	국가독성과학연구소	경남바이오환경연구본부	2012	경남 진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설립기관

설립연구기관(27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19개)		그 외 연구기관 (8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3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공시항목 비교

번호	알리오 항목	출연연 공시 여부	비고
1	일반현황	공시	
2	내부규정	공시	
3	임직원수	공시	
4	임원현황	공시	
5	신규채용 현황	공시	
6	임·직원 채용정보	공시	
7	임·직원 퇴직정보	공시	
8	징계현황	공시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공시	
10	임원연봉	공시	
11	직원 평균보수	공시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시	
13	복리후생비	공시	
14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공시	
15	노동조합 관련현황	공시	
16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공시	
17	ESG 경영 및 운영 위원회 현황	공시	
18	대기환경	공시	
19	자원환경	공시	
20	환경보호	공시	
21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공시	
22	사회공헌 활동	공시	
23	인권경영	공시	
24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공시	
25	동반성장 평가결과	미공시	해당사항 없음
26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27	구매실적	공시	
28	이사회	공시	
29	자체 감사부서 현황	공시	
30	청렴도 평가결과	공시	
31	요약 재무상태표	공시	
32	요약 손익계산서	공시	
33	수입·지출 현황	공시	
34	자본금 및 주주현황	공시	
35	장·단기 차입금 현황	공시	
36	감사보고서	공시	
37	납세정보 현황	공시	
38	주요사업	공시	
39	투자집행내역	미공시	해당사항 없음
40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공시	
41	경영부담 비용추계	공시	
4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미공시	해당사항 없음
43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미공시	해당사항 없음
44	경영평가결과	공시	
45	국회 등 외부평가	공시	
4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미공시	해당사항 없음
47	계약정보	공시	
48	연구보고서	공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